

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안

1. 개정 이유

철도건설에 필요한 기준 중 건축한계의 범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, 가공 급전선의 위치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여 철도건설기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건축한계의 범위에 관한 예외 허용(안 제14조제4항 신설)
- 나. 가공 급전선의 위치를 안전성, 경제성, 절연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(안 제41조)
- 다. 조문 제목 변경 등 문구 수정(안 제9조, 제10조 및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안

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완화곡선의 삼입)”을 “(완화곡선)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 길이)”를 “(직선 및 원곡선)”으로 하고, “직선과 원곡선의 최소길이”를 “두 개의 캔트 변화구간 사이의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길이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선로의 기울기)”를 “(기울기)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본문 중 “건물”을 “구조물”로, “구조물”을 “시설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다만, 가공전차선(架空電車線) 및 그 현수장치(懸垂裝置)와 선로 보수 등의”를 “다만,”으로 하고,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궤도상에 일정한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열차운행의 안전성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건축한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.

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1조(가공 급전선의 위치) 가공 급전선은 건축한계, 안전성, 경제성 및 절연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완화곡선의 삽입) (생략)	제9조(완화곡선)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길이) 본선의 경우 직선과 원곡선의 최소길이는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일정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	제10조(직선 및 원곡선) ----- -----두 개의 캔트 변화구간 사이의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길이-----
제11조(선로의 기울기) (생략)	제11조(기울기) (현행과 같음)
제14조(건축한계) ① (생략) ② 건축한계 내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가공전차선(架空電線) 및 그 현수장치(懸垂裝置)와 선로 보수 등의 작업에 필요한 일시적인 시설로서 열차 및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(생략) <신설>	제14조(건축한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구조물----- -----시설물----- -----, 다만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궤도상에 일정한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열차운행의 안전성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건축한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.
제41조(가공 급전선의 높이) 나전선으로 시설하는 가공 급전선의 높이는 전차선 높이 이상이고 적절한 절연 이격거리가 확보되는 높이	제41조(가공 급전선의 위치) 가공 급전선은 건축한계, 안전성, 경제성 및 절연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정하여야 한다.

이 이상이어야 한다.